전기공급약관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4 6

kepco

차 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 3
제 2조 (적용구역) ····· 3
제 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3
제 4조 (시행세칙) ····· 3
제 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3
제 6조 (정의) ····· 4
제 7조 (끝자리 수의 처리) ····· 7

제2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8조 (전기사용신청) ····· 11
제 9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 11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12
제11조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 13
제12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13
제13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13
제14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 14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14
제1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15
제17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 ····· 16

제3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18조 (전기사용장소) ····· 19
제18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 19
제18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 19
제19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 20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 20

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21조 (공급) ····· 25
제22조 (공급방법) ····· 25
제23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 25
제24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 27
제25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 28
제26조 <삭 제> ····· 28
제27조 (수급지점) ····· 28
제28조 (공급설비의 시설) ····· 29
제29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 30
제30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 30
제31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 30
제32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 31
제33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 ····· 31
제34조 (인입선의 연결) ····· 32
제35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 32
제36조 (전용공급설비) ····· 32
제37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 33
제38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 33

제5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37
제40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 37
제41조 (역률의 유지) ····· 38
제42조 (역률의 계산) ····· 38
제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39
제44조 (위약금) ····· 40
제4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 41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 42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 43
제48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43
제49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 45
제49조의 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 손해배상) ····· 45
제50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 46
제51조 (업무협조) ····· 46
제51조의 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 47

제6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52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 51
제53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51
제54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52

제7장 계약종별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 55
제56조 (주택용전력) ····· 55
제57조 (일반용전력) ····· 55
제58조 (교육용전력) ····· 57
제59조 (산업용전력) ····· 59
제60조 (농사용전력) ····· 60
제61조 <삭 제> ····· 62
제62조 (가로등) ····· 62
제63조 (예비전력) ····· 62
제64조 (임시전력) ····· 64
제65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 65

제8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66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 69
제67조 (요금의 계산) ····· 69
제67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 73
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 74
제67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 75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 75
제69조 (검침일) ····· 77
제70조 (요금의 계산기간) ····· 77
제71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 77
제72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 78
제73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 78
제74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78
제75조 (연체료) ····· 79
제76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 79
제77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 80

제78조 (선수금) ····· 80
제79조 (요금의 보증) ····· 81
제80조 (일수계산(日數計算)) ····· 82
제81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 82
제82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 83

제9장 시설부담금

제83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 87
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87
제85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88
제86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89
제87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89
제88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 90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 90
제90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 91
제9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 91
제92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 92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 92
제94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 93
제95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 95
제96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96
제97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97
제98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 98

부 칙 ····· 101

【별 표】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 113
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 126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 131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 132
별표 5. 적정전선환산표 ····· 133
별표 6. <삭 제> ····· 135

【별지서식】

(별지1-1호 서식) ····· 139
(별지1-2호 서식) ····· 141
(별지1-3호 서식) ····· 143
(별지2-1호 서식) ····· 145
(별지2-2호 서식) ····· 147
(별지3호 서식) ····· 150
(별지4호 서식) ····· 154
(별지5호 서식) ····· 156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구역)

이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5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變電所)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送電線路)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配電線路)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5. 지지물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6. 인입선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7. 사용설비(使用設備)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9. 계약전력(契約電力)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9. 임시전력(臨時電力)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1. 예비전력(豫備電力)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공급전압 및 그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25.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26. 수급개시일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한전이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된 날을 말합니다.

27. 역률(力率)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 7 조 (끝자리 수의 처리)

①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 분	계 산 단 위
사 용 설 비	1W
변 압 기 설 비	1VA
계 약 전 력	1kW
요 금 적 용 전 력	1kW
최 대 수 요 전 력	1kW
사 용 전 력 량	1kWh
무 효 전 력 량	1kVarh
역 률	1%
전 기 계 기 의 오 차 율	0.1%

②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8 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제 9 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전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한전은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 10 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①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대상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④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변경내용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상속, 합병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당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①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가. 해지이전과 동일한 고객이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한전은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서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3. 시설부담금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하

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해지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후 10년 경과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4. <삭 제>

②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제 17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8 조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②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매매·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장소 획정,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등 전기사용계약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전력 환 산 율	비 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21 조 (공급)

① 한전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1. 시설부담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일반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한전은 기상여건·용지사정·전기공급설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수급개시일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제 22 조 (공급방법)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방식,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 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500 kW 미만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중 한전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500 kW 이상 10,000 kW 이하	교류 삼상 22,900V
10,000 kW 초과 400,000 kW 이하	교류 삼상 154,000V
400,000 kW 초과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 미만인 경우의 저압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전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의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 154,0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고객이 저압공급을 희망하고 개폐기·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해당지역의 전기공급상황에 따라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고객이 변전소 건설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표준전압	유지범위
110V	110V ± 6V 이내
220V	220V ± 13V 이내
380V	380V ± 38V 이내

제 24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이 전기를 배전(配電)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고압 이상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25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①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2.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3.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②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6 조 (삭 제)

제 27 조 (수급지점)

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②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2.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3. 제30조(공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4.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5.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6.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7.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8.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1.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2.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3.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

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9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①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공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금(腕金)을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이 때 "인입선 연결점"은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공중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한전은 원칙적으로 공중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용애자를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③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금(腕金)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제 31 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① 한전의 지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지중인입선 연결점까지 한전이 시설합니다. 이 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개폐기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이나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③ 지중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관로·케이블인입구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이 희망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시설·소유합니다.

제 32 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① 한전은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으로서 1건물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② 한전은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

①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

에 이르는 배선(이를“인입구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②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이나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노출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인입선의 연결)

한전의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한전이 시공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입선이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입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6 조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하 “전용공급설비”라 합니다)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1.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경우
2.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제 37 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①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포함)와 동 부속장치(계기용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부속장치(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와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② 전기계기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선설비(전기계기함·변성기함·변성기 배선·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 및 고객 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단독계기함은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③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기계기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기계기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재검정, 시험 및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제 38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①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③ 교육용 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39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高調波)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1. 한전 공급설비의 설계・시공・개수・순시 및 점검을 할 경우
2.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및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경우

3. 이 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할 경우
4. 전력량계를 검침하거나 시험할 경우
5. 고객의 역률을 측정할 경우
6.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할 경우

제 41 조 (역률의 유지)

①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역률(遲相力率) 90%(이하"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 형태에 따라 한전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 등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42 조 (역률의 계산)

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봅니다.

②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제 43 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①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력량계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②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 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

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 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

나. "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제 44 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후 재사용 고객이 해지의 원인이 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고객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고객이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 4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34조(인입선의 연결)을 위배한 경우
4. 고객이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② 고객이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려드린 후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

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4. 고객이 계약된 전기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5.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른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6. 고객이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
7. 고객이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에 따른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8. 고객이 제41조(역률의 유지)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상역률이 되는 경우
9.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고객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4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고객이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및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해지사유를 해소하였거나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 정지후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을 때,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후 재사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전기를 다시 공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휴지되거나 전기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후 정상공급하는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47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한전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48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한전은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1. 계약전력 1,000㎾미만 고객
   1개월중 1일 동안 연속 1시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4% × 중지일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text{감액요금} = \text{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times \frac{\text{제한전력}}{\text{요금적용전력}} \times 4\% \times \text{제한일수}$$

2. 계약전력 1,000㎾이상 고객
   1개월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text{감액요금} = \text{기본요금} \times \frac{\text{제한전력}}{\text{요금적용전력}} \times 0.2\% \times \text{제한시간수}$$

②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동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가로등(갑) 고객 :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2. 제1호 이외의 고객 : 공급중지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까지

③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3.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49 조의 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 손해배상)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합니다.
2. 제1호의 전기요금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 청구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50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 한전의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기타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제 51 조 (업무협조)

①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소정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 51 조의 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한전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⑤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52 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1. 인입선, 전기계기 등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고객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이 때 수전용 변압기, 수전용 차단기, 수전용 보호계전기, 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정부 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개시전에 수전전력의 차단방법(보호계전방식 및 보호협조 포함) 등을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⑤ 고객이 기술기준에 따라 고객과 한전간에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후 고객부담으로 시설·소유해야 합니다.

⑥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54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① 고객소유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는 고객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계 약 종 별

제 7 장 계약종별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56 조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 57 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고객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④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일반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일반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58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3. <삭 제>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② 교육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교육용전력(갑)
   계약전력 4kW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2. 교육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교육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하며, 교육용전력(을) 고객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용전력(갑) 고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59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 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2. 산업용전력(을)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고객
   다. 고압전력(C)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⑤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갑)Ⅱ를 적용하며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적용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0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표준전압 100V·220V·380V 고객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3)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합니다.

1. 제1항 제2호 “나”목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고객
2. 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어촌계에 해당하는 고객이 제1항 제2호의 농사용 전력(을)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다만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한다.

③ <삭 제>

제 61 조 (삭제)

제 62 조 (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 가로등(을)
   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제 63 조 (예비전력)

① 저압 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전력(갑)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2. 예비전력(을)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②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은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계약전력의 결정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계약전력 이내에서 상용전력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전력은 상용전력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와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합니다.

⑤ 예비전력은 제67조 1항의 요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과 다른 때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1. 기본요금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력량요금

상용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⑥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전력 최대수요전력을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으로 하여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⑦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는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용전력의 역률은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으로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⑧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갑)과 예비전력(을)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64 조 (임시전력)

①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임시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임시전력(갑)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2. 임시전력(을)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

제 65 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해당 계약종별		적용계약종별
(가)	(나)	(다)
주택용전력	기타계약종별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 이외의 기타 계약종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농사용전력(갑)	농사용전력(을)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 "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점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

되지 않는 상점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개별 호실에서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함에 따라 주거부분과 업무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과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표 “가”와 “나”란에서 정한 계약종별의 요금단가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66 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고객에 대한 요금은 전기의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67 조 (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삭 제>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2. <삭제>
3.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③ 전기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고객(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및 집단주거용 사회

복지시설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호수(戶數),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압공급아파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종합계량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 방법에 따라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칙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하며, 11월분부터 익년 4월분까지의 요금계산 기간중 호별 월 300㎾h이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을 적용합니다.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전력량요금 적용기준
처음 200㎾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
다음 100㎾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
다음 200㎾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300%
500㎾h 초과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500%

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하 “1주택수가구”라 합니다)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전체 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1.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은 제외합니다.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자(子)”3인 또는“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3. 제56조[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 [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갑), 산업용전력(갑)Ⅰ, 농사용전력(을) 고압A·고압B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여름철(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봄·가을철(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겨울철(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⑨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⑩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절이 바뀔 때의 요금의 구분 계산방법은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⑪ 제56조(주택용전력)에 따라 주택용전력이 적용되는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월 사용전력량 중 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높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2. 월 사용전력량 중 100kWh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67 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고객의 요금은 1개월 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누진단계 완화에 따른 감액은 월 12,000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2. 제1호 이외의 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

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적용 중에 가구원수, 주소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7 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

초과전력(kW)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2. 제1호 이외의 고객

계약전력 1kW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451kWh/월 ~720kWh/월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kW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청구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67 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은 공급전압에 따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Ⅰ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로 구분하며, 적용대상 및 요금적용방법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8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 이전분과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고, 설치 이후분과 철거 이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임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고장, 재검정,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전월분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삭 제>
3.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며, 12개월이 경과된 뒤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제 69 조 (검침일)

①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2.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 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달 사용량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서 매월 검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0 조 (요금의 계산기간)

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80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71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① 사용전력량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사용전력량을 검침기간의 사용전력량으로 합니다.

② 사용전력량은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전압과 계량점 전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용전력량을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손실률로 가감합니다.

③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제 72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 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계기용 변성기 이상으로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다시 산정합니다.

제 73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2. 전기계기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
3. 계절이 변할 때 전기계기의 표시일이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1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74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고객의 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정기검침일
   2. 정액제 요금을 적용하는 고객은 그 고객이 속한 검침구역의 정기 검침일
   3.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고객별로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③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1고객이 여러 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요금 납기일별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5 조 (연체료)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text{연체료} = \text{미납요금} \times 2.0\% \times \frac{\text{연체일수}}{\text{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text{연체료} = \text{미납요금} \times 2.0\% \times \frac{\text{연체일수}}{\text{월력(月曆)일수}}$$

제 76 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

는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77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① 고객은 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한전의 해당 지사(점)를 포함합니다)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전에 신청을 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예금계좌에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인터넷·전화 등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한전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④ 한전은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고객의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서 청구되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8 조 (선수금)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제 79 조 (요금의 보증)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사용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 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3.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이 경우 주택용전력 고객, 계약전력 20kW이하 고객,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은 제외합니다.
4.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③ 보증기간은 2년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하고, 제1항 제2호·제3호로서 2년중 1회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2년 이내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80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제 81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①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休止)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농사용전력
2.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중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3. 유수지 배수펌프장
4.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② 일정 계약전력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은 휴지 또는 재사용

을 생략하고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③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객과 1년간 사용전력량이 없는 계약전력 3㎾이하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전기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한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금등을 전기요금과 병기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83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4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제97조(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1. 한전이 철탑(鐵塔)이나 해저(海底)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공중배전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3. 제62조(가로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다른 공급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한전이 인입선만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②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경계지점까지의 일반공급설비(이하 "전기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및 단지안에 기간이 되는 배전선로(이하 "단지내 배전시설"이라 합니다)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④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제1항에 따라 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배전선로에서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85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1. 전용공급설비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공급설비

②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에게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새로이 특별공급설

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부담합니다.

제 86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임시전력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하 "상시전력"이라 합니다)로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 임시전력 사용신청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상시전력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여건상 임시공급설비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수급지점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기설비를 고객이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 87 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상용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예비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은 상용전력 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에 준합니다. 다만, 저압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예비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②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을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먼저 산정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제 88 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①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공중 또는 지중 전선로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89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 변경후의 시설부담금이 변경전의 시설부담금보다 적거나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당해 공급설비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고객이

각 호별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 90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또는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등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공동시설부담금"으로 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고객이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는 때에도 공동시설부담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제 91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관로나 전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 92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공사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③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전기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④ 한전이 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더하여 환불하며, 이때 한전은 환불 대상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93 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① 저압, 고압 또는 22,900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기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 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는 경우 및 공중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신설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신설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첨가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4 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①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거리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리(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신설거리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지표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합니다.

2.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이하 "첨가공사"라 합니다) 구간의 실거리로 합니다. 다만, 인입선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측정기점"은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 공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저압고객 :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다. "가" 및 "나"의 적용에 있어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첨가거리를 적용합니다.

2. 지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은 고객

가. 저압고객 : 지중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변압기,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맨홀 또는 핸드홀. 다만,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삼상 전원이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나. 22,900V 특별고압 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지중 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삼상변압기, 맨홀 또는 핸드홀

3.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상용전력 공급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을)의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 변전소의 전원이 있는 배전선로만을 측정기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 고객의 상용전력 공급설비

는 측정기점에서 제외합니다.

③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2호 이상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측정합니다. 다만, 배전선로 실연장 지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장지점별로 별개의 집단고객으로 봅니다.

1. 22,900V 특별고압 또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다른 고객에 대하여는 먼저 측정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2.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간에는 측정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부터 1호씩 순차적으로 제1호에 준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시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는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측정기점으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제 95 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다음 제1호의 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A)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률 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방법

$A = (fc \times C) + (fe \times E) + (fs \times S) + (fw \times W)$

(주) A : 조정률

fc : 시멘트가격 변동률
C : 시멘트 구성비(16.4%)
fe : 전선(알루미늄 제품) 가격 변동률
E : 전선 구성비(37.5%)
fs : 철강가격 변동률
S : 철강 구성비(19.7%)
fw : 노임단가 변동률
W : 노임 구성비(26.4%)

2. 조정 기준

주요자재(시멘트, 전선, 철강) 가격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매년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로 하며, 노임단가는 매년 9월 기준 한전의 배전선로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배전전공 노임단가로 합니다.

제 96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압기, 배전함, 관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 - (A+B) + (A1+B1)

A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설치공사비

$$A1 = A \times \frac{\text{신·증설 계약전력(kW)}}{\text{변압기 또는 배전함 용량(kVA)}}$$

B = 관로설치공사비

$$B1 = B \times \frac{\text{고객 사용공수}}{\text{설치공수}}$$

2. 기설 변압기, 배전함 또는 관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 97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전선, 지중관로, 전력구, 지중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적정전선의 결정을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에 의하며, 1㎞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립니다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설계시설부담금 - (A+B+C+D) + (A1+B1+C1+D1)

A = 전선 설치 공사비
B = 지중관로 설치 공사비
C = 전력구 설치 공사비
D =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설치공사비
A1 = 별표 5에 의한 적정규격의 전선 설치공사비

$$B1 = B \times \frac{\text{고객 사용공수}}{\text{설치공수}} \times \text{관로공사비 조정률}$$

C1 = 전력구가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해당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

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전력구 부분의 공사비

$$D1 = \text{개폐기 설치 공사비} \times \frac{\text{고객 사용 단자수}}{\text{부하측 단자수}}$$

2. 적정규격의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관로규격보다 상위 규격의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공사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적정전선규격(㎟)	적정관로규격(㎜)	관로공사비조정률 (조정기준관로 : 175㎜)
100~325	175	100%
60	150	85%

3. 장래 전기사용 전망을 고려하여 한전이 미리 설치한 지중관로·전력구 또는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를 이용하여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 98 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①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전의 필요에 따라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를 동시에 시공할 경우 기존공급설비 보강부분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기존공급설비의 보강"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
2.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부하분리를 위한 신설연장 및 첨가공사비 포함)
3. 전압강하방지 또는 보상공사를 요하는 경우
4. 단상 2선식 220V 공급을 위한 1선 첨가공사를 요하는 경우

부 칙

부 칙 (1999. 10. 19)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44조(위약금) 제4항과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 및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0년 1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4.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의 규정은 1999년 9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9. 11. 10)

이 약관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0. 11. 17)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1. 6. 28)

이 약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 5. 30)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 12. 3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4조(위약금) 제2항 및 제4항 및 제63조(예비전력) 제3항의 규

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2. 제44조(위약금) 제5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3.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에 의한 산업용전력(병) 고압B고객이 선택(Ⅲ)요금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선택요금을 적용합니다.
4.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환불요금부터 적용합니다.
5. 제85조(특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2항 및 제87조(예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1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6.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3. 3. 24)

이 약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3. 12. 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한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2항의 적용은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2. 별표 4 [표준공사비 단가표] 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제8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2004. 3. 2)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57조(일반용전력) 제2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계약전력 1,000kW 이상 3,000kW 미만 고객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4. 3. 31)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3. 1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단서 1호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종합계약 "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방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2006. 1. 23)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6. 28)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의 규정은 2006년 9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1. 1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0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4. 3)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7. 27)

① (시행일)이 약관은 2007. 8.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비전력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8. 11. 27)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과 별표 1. 7 임시전력의 규정은 2008.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8. 26)

①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3항, 제67조의3(초과사용 부가금),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규정은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0. 7. 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11.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위임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이 확정·공고된 이후 세부기준을 세칙에 반영하여 정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2.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제3호 및 제49조의2(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56조(주택용전력) 제4호,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및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표 단서 제4호의 신설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는 분(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까지 수급개시되지 않은 고객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현재 일반용전력으로 공급중인 오피스텔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전기사용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수급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제67조(요금의 계산) 제8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5.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1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 24)

이 약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3조(예비전력) 및 제67조(요금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 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최초 기준연료비 산정)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기준연료비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 칙 (2011. 8.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단서 및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2.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 사용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2.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전기사용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아파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제42조(역률의 계산) 및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4.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5.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 최대수요전력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2. 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57조(일반용전력), 제58조(교육용전력) 및 제59조(산업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제67조(요금의 계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7호(임시전력) 중 임시전력(을) 요금 적용방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4. 2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요금적용)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나목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은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2. 8. 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 제60조(농사용전력) 제1

항·제2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개정규정,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1항의 신설 규정 및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항의 신설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3. 별표 3(계절별 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세칙에서 정하는 "기타사업 및 농사용전력 계약종별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으로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산업용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나.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 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약관 제60조 (농사용전력)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 농사용전력(을)·농사용전력(병)이 통합된 개정 농사용전력(을)로 2012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
   다. 2012년 8월 6일 현재,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산업용전력(갑) 고객으로서 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산업용전력(을)로 변경되는 고객

부 칙 (2013. 1. 14)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은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계절별 차등요금 [일반용전력(갑)Ⅰ, 산업용전력(갑)Ⅰ]을 적용합니다.

2.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의 개정 규정,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신설규정, 제57조(일반용전력) 제4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5항의 신설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3. 11.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4. 6.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 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규정은 2014년 8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별 표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10원
101 ~ 200kWh	사용시	호당	910원
201 ~ 300kWh	사용시	호당	1,600원
301 ~ 400kWh	사용시	호당	3,850원
401 ~ 500kWh	사용시	호당	7,300원
5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12,940원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60.7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5.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87.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80.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417.7원
500kWh초과	kWh당	709.5원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삭 제>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사용시	호당	410원
101 ~ 200kWh	사용시	호당	730원
201 ~ 300kWh	사용시	호당	1,260원
301 ~ 400kWh	사용시	호당	3,170원
401 ~ 500kWh	사용시	호당	6,060원
5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10,760원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7.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98.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7.3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15.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25.7원
500kWh초과	kWh당	574.6원

(3) <삭 제>

2.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가. 일반용전력(갑) Ⅰ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16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5.7원	65.2원	92.3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5.9원	71.9원	103.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1.9원	67.6원	98.3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13.8원	70.8원	100.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108.5원	65.5원	95.3원

나. 일반용전력(갑)Ⅱ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7원	62.7원	71.4원
중간부하시간대	113.9원	70.1원	101.8원
최대부하시간대	136.4원	81.4원	116.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4원	57.4원	66.1원
중간부하시간대	108.6원	64.8원	96.5원
최대부하시간대	131.1원	76.1원	111.3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1원	62.1원	71.1원
중간부하시간대	110.7원	68.0원	98.4원
최대부하시간대	127.1원	73.4원	112.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2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8원	56.8원	65.8원
중간부하시간대	105.4원	62.7원	93.1원
최대부하시간대	121.8원	68.1원	107.3원

다. 산업용전력(갑) I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1.0원	59.2원	79.3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9.6원	65.9원	89.5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4.8원	61.3원	83.0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8.4원	64.8원	88.0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83.7원	60.2원	81.9원

라. 산업용전력(갑)Ⅱ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5원	60.5원	67.9원
중간부하시간대	86.3원	65.3원	84.8원
최대부하시간대	119.8원	84.5원	114.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6원	55.6원	63.0원
중간부하시간대	81.4원	60.4원	79.9원
최대부하시간대	114.9원	79.6원	109.3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3원	57.3원	64.5원
중간부하시간대	84.9원	63.9원	82.5원
최대부하시간대	118.7원	82.7원	111.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0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2.8원	52.8원	60.0원
중간부하시간대	80.4원	59.4원	78.0원
최대부하시간대	114.2원	78.2원	106.7원

마.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2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1.6원	61.6원	68.6원
중간부하시간대	114.5원	84.1원	114.7원
최대부하시간대	196.6원	114.8원	172.2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3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1원	56.1원	63.1원
중간부하시간대	109.0원	78.6원	109.2원
최대부하시간대	191.1원	109.3원	166.7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81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2원	55.2원	62.5원
중간부하시간대	108.4원	77.3원	108.6원
최대부하시간대	178.7원	101.0원	155.5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0원	60.0원	67.0원
중간부하시간대	112.3원	82.3원	112.3원
최대부하시간대	193.5원	112.6원	168.5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2원	56.2원	63.2원
중간부하시간대	108.5원	78.5원	108.5원
최대부하시간대	189.7원	108.8원	164.7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5원	54.5원	61.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8원	76.9원	106.8원
최대부하시간대	188.1원	107.2원	163.0원

(2)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5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9.5원	59.5원	66.4원
중간부하시간대	112.4원	82.4원	112.0원
최대부하시간대	193.3원	112.8원	168.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52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8원	54.8원	61.7원
중간부하시간대	107.7원	77.7원	107.3원
최대부하시간대	188.6원	108.1원	163.9원

(다) 선택(Ⅲ)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3.7원	53.7원	60.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6원	76.6원	106.2원
최대부하시간대	187.5원	107.0원	162.8원

3. 교육용전력

가. 교육용전력(갑)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3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9원	59.7원	84.1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6.6원	59.8원	82.6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2.1원	55.4원	78.1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5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5.9원	59.4원	81.8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7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91.4원	54.9원	77.3원

나. 교육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9.8원	49.8원	53.8원
중간부하시간대	94.5원	64.2원	93.0원
최대부하시간대	160.4원	84.7원	131.7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5.3원	45.3원	49.3원
중간부하시간대	90.0원	59.7원	88.5원
최대부하시간대	155.9원	80.2원	127.2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0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8.3원	48.3원	52.1원
중간부하시간대	91.8원	62.5원	90.1원
최대부하시간대	154.7원	82.3원	127.4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9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3.8원	43.8원	47.6원
중간부하시간대	87.3원	58.0원	85.6원
최대부하시간대	150.2원	77.8원	122.9원

4. 농사용전력

가. 농사용전력(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1.6원

나. 농사용전력(을)

(1) 저압전력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15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39.2원

(2) 고압전력A · 고압전력B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21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41.9원	39.9원	41.9원

5. 가로등

가. 가로등(갑)

(1) 최저요금은 1,220원으로 합니다.

(2) 전력요금 : 사용설비용량에 대하여 W당 37.5원

나. 가로등(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85.9원

6. 임시전력

가. 임시전력(갑)

(1) 기본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2) 전력량요금 :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합니다.

(3)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임시전력(을)

(1) 계약전력 300㎾ 미만의 고객

일반용전력(갑)Ⅰ,Ⅱ 요금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00㎾ 이상의 고객

일반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합니다.

7. 요금의 적용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합니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중분류		세 분 류
제조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금속광업(06)	철광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기타 비철금속 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용제외)(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소금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광업지원 서비스업(08)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식료품 제조업(10)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11)	발효주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성음료 및 얼음 제조업
	담배제조업(12)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제조업, 끈·로프·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정장 제조업, 내의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 제조업

중분류		세 분 류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제재 및 목재가공업, 박판·합판 및 강화목재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상자·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포대·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19)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으로 분할),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 잉크·페인트·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고무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제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제조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24)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5)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탱크·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금속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열처리·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분류		세 분 류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오디오·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제조업,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 및 가죽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선박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중분류	세 분 류
기타사업	① 농사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② 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하는 전력(다만, 생산량의 대부분을 출하할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함) ③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④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주민이 공동관리 유지하는 비영리 간이상수도 및 학교·군부대·기업체·종교단체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자가수도시설 및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의 상수도가압설비 포함) ⑤ 전기철도사업 ⑥ 자동양곡 하역 및 저장업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⑧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오수·분뇨 처리시설 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소각시설 ⑩ 유수지배수펌프장 ⑪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기관 ⑫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열공급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의 생산 및 송출용전력 ⑬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⑭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의 송유관시설 ⑮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장 ⑯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조명시설 포함) 및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 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 중 옥내 전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의 전시시설과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모두 갖춘 전시시설 ⑲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 ⑳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㉑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터미널 ㉒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㉖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기술 연구시설

중분류		세 분 류
기타사업		㉗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특구 내에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도소매시설 및 판매시설 제외) ㉚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채취·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수급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력
2.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맞춤 제조 판매하는 양복(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용품을 맞춤 제조(편조를 포함합니다.) 판매하는 산업활동
3.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4.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셔터·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주> 1. 이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통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제2007-53호 '07.12.28)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당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2. 광업,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계절별 / 시간대별	여름철 (6월 1일~8월 31일)	봄·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다만, 1.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합니다.

2.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구 분		금 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 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20,000원	527,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86,000원	123,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17,000원	44,000원

2.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구 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 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 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주) 1.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2.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별표 5) 적정전선환산표

1. 공중배전선로

22.9kV - Y(22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 용량(kW)	ACSR(-OC)32□ (HDCC 22□)	ACSR(-OC)58□ (HDCC 38□)	ACSR(-OC)95□ (HDCC 60□)	ACSR(-OC)160□ (HDCC 100□)
1,000 이하	39이하 (42이하)	40~60 (43~61)	61~82 (62~82)	83~111 (83~107)
1,001~2,000	19이하 (21이하)	20~30 (22~30)	31~41 (31~41)	42~56 (42~53)
2,001~3,000	13이하 (14이하)	14~20 (50~20)	21~27 (21~27)	28~37 (28~35)
3,001~4,000	9이하 (10이하)	10~15 (11~15)	16~20 (16~20)	21~28 (21~26)
4,001~5,000	7이하 (8이하)	8~12 (9~12)	13~16 (13~16)	17~22 (71~21)
5,001~6,000		10이하(10이하)	11~13 (11~13)	14~18 (14~17)
6,001~7,000		8이하 (8이하)	9~11 (9~11)	12~15 (12~15)
7,001~8,000		7이하 (7이하)	8~10 (8~10)	11~13 (11~13)
8,001~9,000			9이하 (9이하)	10~12 (10~12)
9,001~10,000			8이하 (8이하)	9~11 (9~10)

6.6kV 배전선로

(단위 : ㎞)

전선굵기 / 용량(kW)	ACSR(-OC)32□ (HDCC 22□)	ACSR(-OC)58□ (HDCC 38□)	ACSR(-OC)95□ (HDCC 60□)	ACSR(-OC)160□ (HDCC 100□)
300 이하	11이하 (11이하)	12~17 (12~17)	18~23 (18~23)	24~31 (24~30)
301~600	5이하 (5이하)	6~8 (6~8)	9~11 (9~11)	12~15 (12~15)
601~900	3이하 (3이하)	4~5 (4~5)	6~7 (6~7)	8~10 (8~10)
901~1,200	2이하 (2이하)	3~4 (3~4)	5 (5)	6~7 (6~7)
1,201~1,500	2이하 (2이하)	3 (3)	4 (4)	5~6 (5~6)
1,501~1,800		2이하 (2이하)	3 (3)	4~5 (4~5)
1,801~2,100		2이하 (2이하)	3 (3)	4 (4)
2,101~2,400			2이하 (2이하)	3 (3)
2,401~2,700			2이하 (2이하)	3 (3)
2,701~3,000			2이하 (2이하)	3 (3)

2. 지중배전선로

22.9kV-Y(22KV) 배전선로

(단위 : km)

전선굵기 / 용량(kW)	22.9kV-y CN-CV 22kV CV-CU 60□	22.9kV-y CN-CV 22kV CV-CU 100□	22.9kV-y CN-CV 22kV CV-CU 150□	22.9kV-y CN-CV 22kV CV-CU 200□	22.9kV-y CN-CV 22kV CV-CU 250□	22.9kV-y CN-CV 22kV CV-CU 325□
1,000 이하	92 이하	93~142	143~196	197~233	234~271	272~318
1,001~2,000	46 이하	47~71	72~97	98~116	117~135	136~159
2,001~3,000	30 이하	31~47	48~65	66~77	78~90	91~106
3,001~4,000	23 이하	24~35	36~48	49~58	59~67	68~79
4,001~5,000	18 이하	19~28	29~39	40~46	47~54	55~64
5,001~6,000		23 이하	24~32	33~39	40~45	46~53
6,001~7000		20 이하	21~28	29~33	34~38	39~45
7,001~8,000			24이하	25~29	30~34	35~39
8,001~9,000			21이하	22~26	27~30	31~35
9,001~10,000			19이하	20~23	24~27	28~32

6.6kV 배전선로

(단위 : km)

전선굵기 / 용량(kW)	6.6kV CV-CU 60□	6.6kV CV-CU 100□	6.6kV CV-CU 150□	6.6kV CV-CU 200□	6.6kV CV-CU 250□	6.6kV CV-CU 325□
300 이하	25 이하	26~38	39~53	54~63	64~73	74~86
301~600	12 이하	13~19	20~26	27~32	33~37	38~43
601~900	8 이하	9~13	14~18	19~21	22~25	26~29
901~1,200	6 이하	7~ 9	10~13	14~16	17~18	19~22
1,201~1,500	5 이하	6~ 7	8~10	11~12	13~15	16~17
1,501~1,800		6 이하	7~ 9	10	11~12	13~14
1,801~2,100		5 이하	6~ 7	8~ 9	10 이하	11~12
2,101~2,400			6 이하	7~ 8	9 이하	10~11
2,401~2,7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9 이하
2,701~3,5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3.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실설계에 따릅니다.

(별표 6) <삭 제>

별지서식

(별지 1-1호 서식)

전기사용신청서[I]

(계약전력 5kW 이하)

□ 전기사용자

고 객 명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20 . . . .
전기사용장소		상호(공동주택)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E-Mail	@	휴대전화	- -

□ 건축물(토지) 소유자

소유자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계약사항

※ 음영처리 된 부분은 한전이 작성합니다.

신 청 구 분		공급방식	상 선식 V	**계약종별**	**전력**
계 약 전 력	**kW**	사용용도		주생산품	
요금청구장소	· 전기사용장소와 동일한 경우 : □ · 전기사용장소와 다른 경우 :				
자 동 이 체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번호 : -				
이 메 일 청 구	YES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 , NO □				
모 바 일 청 구	휴대폰번호 : , 인증번호 :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청구내역 SMS 확인시 데이터수신비용 약 20원은 고객부담)				
사 용 희 망 일	20 . . .				
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 종목:				
전주관리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인입전주번호:				

사 용 전 점 검 기 관	한 전 □	주택용고객	사 용 전 점검일정	접 수 일 (내선의뢰)	점 검 희망일	점검필증 확 인 일
	안전공사 □	한전점검분을 제외한 전고객 (고객 희망시 한전분도 점검 가능)				
전 기 공 사 업 체 명	(인)		면허번호			
			전화번호			

"전기공사 업체명"에는 반드시 유자격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전기사용자 (인)

※ 위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본인은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날인)
건축허가서	**소유자** (인)
주민등록등(초)본	**사용자** (인)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임야)대장은 공시성 행정정보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불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필수연락처, 주소 등)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전기사용자〉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 용 자 (인)	**소 유 자**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2호 서식)

전기사용신청서(II)

(계약전력 6kW 이상)

□ 전기사용자

고 객 명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20 . . . ,
전기사용장소			상호(공동주택)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E-Mail	@	휴대전화	- -

□ 건축물(토지) 소유자

소유자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계약사항 ※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신청구분		공급방식	상 선식 V	사용용도		주생산품	
계약종별	**전력**	**계약전력**	**kW**	**결정기준**	**변압기설비 □, 사용설비 □**		
선택요금	**I □, II □, III □**			설비용량	변 압 기 사용설비	kVA kW	
APT 계약방법	**단일계약 □,**		**종합계약 □**				
요금청구장소	· 전기사용장소와 동일한 경우 : □ · 전기사용장소와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발행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	종목:			
자동이체	은행, 예금주:	, 주민번호: -	계좌번호 :				
이메일청구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 YES □, NO □						
모바일청구	휴대폰번호 : , 인증번호 :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청구내역 SMS확인시 데이터수신비용 약 20원 고객부담)						

사 용 전 점검기관	한 전 ( )	안전공사 점검분을 제외한 전고객	사 용 전 점검일정	접 수 일 (내선의뢰)	점 검 희망일	점검필증 확 인 일
	안전공사 (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한 전기설비와 한전점검분 중 고객희망 전기설비				
전기공사 업 체 명	(인)		면허번호			
			전화번호			
사용희망일	20 . .	전주관리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	인입전주 번호 :		

"전기공사 업체명"에는 반드시 유자격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전기사용자 (인)

※ 위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본인은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날인)
건축허가서	**소유자** (인)
주민등록등(초)본	**사용자** (인)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임야)대장은 공시성 행정정보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불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필수연락처, 주소 등)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전기사용자〉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 용 자 (인)	**소 유 자** (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시 보증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하는 고객이 작성합니다.
※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수급계약 해지 시까지

전 기 사 용 자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3호 서식)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고객사항

고객번호			신 청 일	20 . . .
고 객 명	성 명(상호)		전기사용장소	
	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별			선 택 요 금	Ⅰ ☐, Ⅱ ☐, Ⅲ ☐
계약전력	kW, 변압기설비 ☐, 사용설비 ☐		아 파 트 계약방법	단일계약 ☐
전화번호				종합계약 ☐
소 유 자	성 명(상호)		E-mail	@
	주민등록번호	-		

변경계약사항(해당항목만 작성)

고 객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
지불지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폰	
계약종별	전력 → 전력	용도 및 산업분류	
계약전력 결정	변압기설비 ☐, 사용설비 ☐	계약전력	kW → kW
선택요금	Ⅰ ☐, Ⅱ ☐, Ⅲ ☐	아파트계약방법	단일계약 ☐, 종합계약 ☐
계약해지	전력, kW	일부해지	kW → kW
계약휴지	전력, kW	해지(휴지)후 재사용	전력, kW
소용량고객 계약종별변경	전력 → 전력 (계약전력 kW → kW)		
요금청구장소변경	☒전기사용장소와 동일한 경우 : ☐ ☒전기사용장소와 다른 경우 :		
청구방법 변경	이메일청구 : 가입 ☐(@), 해지 ☐ 모바일청구 : 가입 ☐(휴대폰번호 : , 인증번호 :), 해지 ☐ ※ 매월 200원 전기요금 할인(청구내역 SMS확인시 데이터수신비용 약 20원 고객부담)		
세금계산서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업태 : 종목 :		
기타 변경사항	계기시험 및 교환( ), 재봉인( ), 이사정산요금( ), 기타( )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전기사용자 (인)

※ 위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 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본인은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날인)
건축허가서	**소유자** (인)
주민등록등(초)본	**사용자** (인)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임야)대장은 공시성 행정정보이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불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필수연락처, 주소 등)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전기사용자〉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 용 자 (인)	**소 유 자** (인)

※ 본 동의서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시 보증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하는 고객이 작성합니다.
※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수급계약 해지 시까지

전 기 사 용 자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성명 (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 또는 전기공사업 면허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1호 서식) ※ 이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필요한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계약서

[ ](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계 약 종 별			전기사용용도	
선 택 요 금				
변압기 설비	kVA		전기사용장소	
사 용 설 비	kW		공 급 방 식	
계 약 전 력	kW		계 량 전 압	
수급개시(예정)일			업무대행업체	
수 급 지 점	상 시			
	예 비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변경) 성립일 이후 요금적용 개시일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 비 내 역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 고객이 직접 선택하신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선택요금' 적용대상)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고압A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전력(을) 고압B·고압C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나. ('선택요금' 선택기준) 고객은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금 특 징
선택(Ⅰ)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Ⅱ)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Ⅲ)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월 500시간 초과되는 고객에게 유리

다. (‘선택요금’ 비교정보의 제공 및 ‘선택요금’의 변경) 고객은 전기사용기간 중 한전 Cyber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제공하는 선택요금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전 해당지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요금’을 비교하실 수 있으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선택요금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요금’ 최초 적용시 또는 계약종별 변경·계약전력 증감·명의변경·업종변경,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 3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한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항 용도에 2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이상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시전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설계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와 같이 임시전력 사용기간 종료 후 상시전력으로의 전환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종별이 임시전력인 경우에만 6번 항목을 추가하여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20 년 월 일

〖고객〗 주 소 :
성 명 : (인)

〖한전〗 주 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리인 (인)

(별지 2-2호 서식) ※ 이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필요한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계약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용)

홍길동(이하 ‘*대표고객*’이라 함), △△△*(이하 ‘공동이용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계 약 종 별			고 객 번 호		
선 택 요 금			전기사용장소		
변압기 설 비			전기사용용도		
사 용 설 비			공 급 방 식		
계 약 전 력			계 량 전 압		
수급개시(예정)일			전기안전대행		
수 급 지 점	상용				
	예비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명				
	고객번호				
	계약종별				
	계약전력				
	선택요금				
	계량전압				
대표고객 요금체납시 해지방법	수급지점 개폐기 ( )				
	대표고객 전용개폐기 ( )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 고객이 직접 선택하신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선택요금’ 적용대상)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산업용전력(을) 고압A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전력(을) 고압B·고압C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나. (‘선택요금’ 선택기준) 고객은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금 특 징
선택(Ⅰ)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Ⅱ)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Ⅲ)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율)이 월 500시간 초과 고객에게 유리

다. (‘선택요금’ 비교정보의 제공 및 ‘선택요금’의 변경) 고객은 전기사용기간 중 한전 Cyber지점 (http://cyber.kepco.co.kr)에서 제공하는 선택요금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전 해당지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요금’을 비교하실 수 있으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선택요금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요금’ 최초 적용시 또는 계약종별 변경·계약전력 증감·명의변경·업종변경,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1년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 3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한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의 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기존 변압기공동이용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의 효력) 이미 공급중인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사항은 동일조건으로 계속 되는 것으로 합니다.

7. (변압기손실량의 부담)변압기손실량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8.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항 용도에 2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2년이상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시전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설계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와 같이 임시전력 사용기간 종료 후 상시전력으로의 전환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신청계약종별이 임시전력인 경우에만 8번 항목을 추가하여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붙임 : 1.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공급조건 1부

20 년 월 일

대표고객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이용 고객	주 소 : **성 명 :** **(인)**
한 전	주 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리인 (인)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공급조건》

1.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

가.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와 동부속장치 설치기준은 전기공급약관 제37조, 제38조 및 동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나. 대표고객의 전기계기는 수전변압기 1차측에 설치하며,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는 동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 인출한 배선과 각 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하되,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2.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종합계기(대표고객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계약전력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최대수요전력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 설치시

○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시

○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5 전기요금체납시 전기사용계약 해지방법

가. 대표고객

(1) 대표고객이 전용개폐기 설치시

○ 대표고객의 전용개폐기를 개방합니다.(이 경우 변압기손실량 요금은 전체 계약전력 중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비율로 조정하여 고객별로 산정합니다.)

(2) 대표고객이 전용개폐기 미설치시

○ 한전과 대표고객간의 수급지점 개폐기를 개방합니다.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모두 전기공급 정지)

나. 공동이용고객은 전기계기 2차측을 개방한 후 전기계기를 철거합니다.

6. 전기안전책임

한전은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도 대표고객의 책임한계점까지 전기안전 및 유지보수책임을 집니다.

7. 대표고객은 수전변압기의 공동사용을 동의해준 공동이용고객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승낙없이는 전기사용을 제재하거나 공급거절할 수 없으며, 공동이용고객은 계약전력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동내용에 대하여 다시 대표고객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8.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변경시 한전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급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급약관, 동시행세칙 및 신규(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별지 3호 서식)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 (신규 · 변경)

본인은 아래 주소지 소재 1주택에 각각의 주거기능을 가지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는 (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고객 동의사항의 가구수 감소사실 통보 및 주민등록정보 열람 등에 동의하오니,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을 적용 바랍니다.

접수일자	20 . . .	접수번호	

신청 정보				
	고객번호		전 화	
	신 청 인	(서명/인)	휴대폰	
	주 소			

[고객 동의 사항]

1.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 및 향후 가구수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한전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개별세대주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가구수 감소 시 감소사실을 한전에 자진하여 신고 하겠으며, 신고 불성실로 부당 적용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독립취사여부 확인 및 가구수 확정을 위해 한전에서 방문하는 경우 현장 확인에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현장조사 거부시 수가구 요금적용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4. 주민등록 전입이 없는 실거주고객은 신청일부터 1년간(12개월) 적용되므로,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거주사실을 증빙하되 미신청시 적용이 해지됨을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한달 이내 한전에 신고하겠으며, 신고불성실로 부당 적용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고객 동의사항 확인란에는 세대주별로 각각 동의서명을 해야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자세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동의사항 확인	가족수	TV 유무
1			(서명/인)		
2			(서명/인)		
3			(서명/인)		
4			(서명/인)		
5			(서명/인)		
6			(서명/인)		
7			(서명/인)		
8			(서명/인)		

위 신청자의 주택 내에는 상기와 같이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담당자 (인)

시(군) 동(읍,면)장 직인

한국전력공사 본부(지사☒점)장 귀하

※ 신청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고, 세대주 기재란 부족시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필수연락처, 주소 등)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등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동의자(성명)	서명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8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앞면의 거주 세대주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8세대 초과시 추가 기재서식]

[고객 동의 사항]

1.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 및 향후 가구수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한전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개별세대주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가구수 감소 시 감소사실을 한전에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겠으며, 신고 불성실로 부당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독립취사여부 확인 및 가구수 확정을 위해 한전에서 방문하는 경우 현장 확인에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현장조사 거부시 수가구 요금적용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4. 주민등록 전입이 없는 실거주고객은 신청일부터 1년간(12개월) 적용되므로,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거주사실을 증빙하되 미신청시 적용이 해지됨을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한달 이내 한전에 신고하겠으며, 신고불성실로 부당 적용 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고객 동의사항 확인란에는 세대주별로 각각 동의서명을 해야합니다.

거주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동의사항 확인	가족수	TV 유무
9			(서명/인)		
10			(서명/인)		
11			(서명/인)		
12			(서명/인)		
13			(서명/인)		
14			(서명/인)		
15			(서명/인)		
16			(서명/인)		
17			(서명/인)		
18			(서명/인)		
19			(서명/인)		
20			(서명/인)		
21			(서명/인)		
22			(서명/인)		
23			(서명/인)		
24			(서명/인)		
25			(서명/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필수연락처, 주소 등) 및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등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동의자(성명)	서명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8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0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6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7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8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9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앞면의 거주 세대주 성명 및 주민등록정보를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별지 4호 서식)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고객정보	고객번호		접수번호 :	
	고 객 명			
	할인대상자 (시 설 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종별	
	사용장소	(아파트 동호수 : –)		
신청항목	복지할인요금	☐ 대가족(3자녀)요금할인 ☐ 생명유지장치 요금할인		
	☐ 장애인 (장애종류: 등급:) ☐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5.18)유공자 ☐ 차상위계층 (해당법령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의 사 항

◇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선택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요금할인을 신청합니다. 향후 이사·가구수변동·시설폐업·수급제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자진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기존 할인요금을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내 사 항

◇ **구비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사 항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가능
복지할인 요금	장애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3급	제출생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할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생략 가능
	국가유공자(5.18)할인 (국가유공자증) 1-3급	제출생략 가능
	차상위계층요금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심야는 제출)
	사회복지시설할인 (인·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제출
대가족(3자녀이상)요금할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제출
생명유지장치요금할인	가정산소치료 처방전, 표준계약서 1부	제출

※ 주민등록 미이전시 **실거주확인서는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내사항**

① 전기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한전에 통지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가족요금 적용기간은 최초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12개월분) 적용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단위로 재신청하시어 가구원 변동사실이 없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구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만료일이 속하는 월분까지만 적용되며,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만료일 당일까지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 복지할인대상자 확인 (행정기관에서 복지할인신청시에만 작성)	상기고객은 귀사의 전기요금 할인대상 고객임을 확인합니다. 소속기관 : 성명 (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기재(제시)한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집·이용(제공)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고객상담 처리, 전기사용신청 처리, 사용전점검 신청, 고객정보변경, 자동납부 업무, 1주택 수가 구업무, 전기요금청구서 발송, 자율검침업무처리, 요금할인 신청·해지처리, 기타민원(TV보유대수 변경/지장전주이설/인입선정비·변경/개폐기조작 신청 등) 처리

나.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다. 기타 개인정보취급방침(cyber.kepco.co.kr)에 고지된 수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 수집항목

신청인 및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국가유공자증명/복지할인증명 등 제증명사항, 전기사용장소 및 청구지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카드) 정보, 전기사용기간/기록, 요금 결제기록

3.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사용기간(신청일~해지일) 및 분쟁대비 기간(계약 등 관한 기록 : 5년) 동안 이용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련 권리의무 관계 등의 확인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 용 자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행정정보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초)본	(인)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인)
장애인증명	(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인)

(별지 5호 서식) ※ 이 서식은 표준서식으로서 필요한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적용 신청서

고객사항

* CPP : Critical Peak Pricing

고객번호				신 청 일	20 . . .
고 객 명	성 명(상호)			전기사용장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계약종별	일반용(을) □	산업용(을) □		현행 선택요금	
소 유 자	성 명(상호)			계약전력	kW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신청사항(변경계약사항)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일반용(을) CPP □		CPP 적용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산업용(을) CPP □						
피크일 수신방법 (필수기재)	휴 대 폰		전력량요금 변동 상하한율	5% □	10% □	20% □	무제한 □
	E-mail	@					

【고객 동의 사항】

1. 신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약관 세칙 별표9(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이하 "CPP요금"이라 한다.)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한전은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 중 10일을 피크일로 지정하며, 피크일 전일까지 시간별 사용전력량 조회 시스템(http://pccs.kepco.co.kr, 이하 "i-SMART"라 한다.) 또는 SMS 등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CPP요금" 적용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가. '13년 1월 1일, '13년 3월 1일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산출
   나. 피크일의 중간부하·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i-SMART"의 시간별 계량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전력량
   다. 비피크일의 중간부하·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중간부하·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서 피크일의 중간부하·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출
5. "CPP요금" 적용기간 중 통신시스템 이상 등으로 시간별 전력량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 전력량계에 계량된 검침월분 정기지침의 경부하☒중간부하☒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을 한도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고객 귀책이 아닌 사유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6.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의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력량요금을 기준으로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력량요금은 고객이 선택한 요금 변동 상하한율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7. 고객이 선택한 "CPP요금" 적용기간 중에는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기간 중 다른 수요관리제도를 고객이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계약종별로 변경,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고객 신설, 계기고장 등으로 "CPP요금" 적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를 적용하여 소급 정산합니다.
8. "CPP요금" 적용기간 중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율 변경일부터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시간대별 요율 조정률을 "CPP요금"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고객) : (인)

수요관리형 선택요금(CPP) 적용 신청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CPP 적용 신청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급약관

발 행 일 : 2014. 6

발 행 처 : 한 국 전 력 공 사
영업처 영업계획팀